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H265712 (2015.09.18.)
- 쟁 점 사 항: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 판정
- 최종 가공국: 미국
- 최종 원산지: 중국



II 사실관계

용도	정밀 화학분석 장비에 사용되는 용매·시약으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식품안전, 임상시험 및 환경 시험 등을 위한 화학물질 분석에 사용되는 재료		
재료		중국	거친 상태의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중국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생산 Manufacturing ▾  미국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중국산 원료 수입 중국산 원료 동결 순수 아세토니트릴 추출 및 정제 분석 및 등급 측정 포장 Domestic distribution ▾  미국 국내 유통		
상세 공정		중국	순도가 95% 미만일 수 있고 물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는 거친 상태의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 생산
		미국	- 거친 상태의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을 동결 - 동결된 덩어리에서 순수 아세토니트릴 추출 및 정제 - 정제된 아세토니트릴 분석 및 생산 등급에 맞는 순도 확인 - 특수 유리병 세척, 충전 및 포장
	기타 사항		완성된 정제 아세토니트릴은 순도가 최대 99.5%이며, 불순물을 거의 함유하지 않음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 신청인은 미국에서 수행되는 정제 공정으로 인해 수입된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이 실질적으로 변형되므로, 최종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의 원산지를 미국으로 주장함

- **(명칭)** 미국으로 수입될 당시 제품은 “crude” 또는 “commercial grade” 아세토니트릴로 불리는 반면, 정제 후에는 “purified” 또는 “analytical grade” 아세토니트릴로 불리므로 명칭이 변경됨
- **(특성)** 수입된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은 산업 제조 공정의 부산물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반면, 정제된 제품은 실험실용 시약(laboratory reagent)의 특성을 가지므로 제품의 특성이 변경됨
- **(용도)** 상업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은 산업공정의 용매로 사용할 수 있으나, 불순물로 인해 시험장비가 손상되거나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정밀 분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정제된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은 정밀 분석시험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도가 변경됨
- **(기타 사항)** 미국에서 수행되는 정제 공정은 일반적인 20,000리터 배치 기준 약 4일이 소요되며, 정교하고 고가인 전문 설비와 정밀 시험장비 및 최소 이학사 학위를 보유한 과학자 등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함

《CBP의 판정》

- ⊙ CBP는 거친 상태의 물질에 대한 단순한 정제(refining) 또는 정화(purification)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를 가진 별개의 상거래 물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기존 판정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에서의 정제 공정이 아세토니트릴의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종 분석용 등급 아세토니트릴의 정부조달 목적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판정함
 - **(명칭)** “crude”, “commercial grade”, “purified”, “analytical”은 모두 “아세토니트릴”이라는 제품명을 수식하는 형용사에 불과하며, 정제 전후 모두 제품명 자체는 아세토니트릴로 동일함
 - **(특성)** 미국에서의 정제 과정에서는 화학반응이나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불순물만 제거되므로, 정제 전후 아세토니트릴의 본질적 특성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음
 - **(용도)** 정제 전 제품은 산업용 용매로 사용되고, 정제 후 제품은 주로 분석시험에 사용되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단순히 한 종류의 산업적 용도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적 용도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 변형을 인정할 만큼 중대한 용도의 변화는 아님

→ 정부조달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중국

IV 시사점

- ⊙ 정제·정화 공정을 통해 순도, 등급 또는 사용가능한 범위가 향상되더라도, 이러한 공정이 단순히 불순물, 수분 제거에 그쳐 원재료의 화학적 정체성과 본질적 특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상거래 물품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기 어려움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무수 에틸알코올
사례번호	HQ 558852(1994.12.21.)
쟁점사항	실질적 변형 인정 여부
사실관계	• [유럽 및 기타 국가] - 거친 상태의 고산성 에틸알코올 원료 생산 • [이스라엘] - 공비증류(azeotropic distillation)를 통해 수입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에틸알코올을 농축하여 정제 함수 에틸알코올 생산 - 분자체 기술을 이용하여 물을 제거해 무수 에틸알코올 생산
판정 결과	• 명칭: 수입된 거친 상태의 에틸알코올과 무수 에틸알코올은 모두 본질적으로 에틸알코올이며, 순도나 도수 차이만 있을 뿐 새로운 명칭을 가진 물품으로 변하지 않음 • 특성: 공비증류 및 분자체 공정에서 화학반응이나 새로운 화합물의 생성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물과 불순물만 제거된 것이므로, 특성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음 • 용도: 원료 및 생산된 최종제품은 모두 음용 혼합물 및 산업용 용매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본질적인 용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